



항 목	현 행	개 정 안
	<p>④신설</p>	<p>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 세부단위 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 실시 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제56조	<p>선금의 지급</p> <p>①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u>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u></p> <p>9~13. (생략)</p> <p>1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u>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u>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만, <u>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체결된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제외한다.</u></p> <p>15. (생략)</p> <p>③ 신설</p>	<p>1~7. (현행과 같음)</p> <p>8.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p> <p>9~13. (현행과 같음)</p> <p>14.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p> <p>.....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 으로 낙찰되어.....</p> <p>15. (현행과 같음)</p> <p>③제 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입금하는 금융기관 에의 급여입금은 급여지급 일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p>
제77조	<p>예정가격의 결정방법</p> <p>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u>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u></p>	<p>② .....</p> <p>.....예산성의 총공사금액 또</p>

항 목		현 행	개 정 안
		<u>한다.</u>	는 총제조금액의 범위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일반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②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설계를 한자 또는 그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는 시공에 관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삭 제>
제84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생략) <신설> 9. (생략)	..... ..... 1~8. (현행과 같음) 9. 제 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0. (현행 제 9호)와 같음
제86조	공사의 현장 설명과 입찰	①~⑦ (생략) ⑧ <신설>	①~⑦ (현행과 같음) ⑧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50미만으로 낙찰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낙찰일부터 2년간은 당해 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 되거나 접속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단지 조성공사 2. 하천공사 3. 항만·공항·도로·철도건설공사 4. 상·하수도 공사 5. 농지개량공사 6. 준설공사
제86조의 2	부대입찰	<신 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주요내용]</p> <p>입정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공사의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하도급의 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하도급시의 수급인 보호를 강화 함</p> </div>	

항 목	현 행	개 정 안
		<p>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입찰의 경우</li> <li>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li> <li>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li> <li>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입찰 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연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92조	일반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79조 내지 제 89조의 규정은 제 79조 내지 제 89조의 · 제 89조의 2.....
제93조	지명 경쟁에 의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생략)</li> <li>6. <u>공업표준화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 표시물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경우</u></li> <li>7.~8. (생략)</li> <li>9. &lt;신설&gt;</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 (현행과 같음)</li> <li>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 표시 물품.....</li> <li>.....</li> <li>.....</li> <li>.....</li> <li>7.~8 (현행과 같음)</li> <li>9.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용역의 경우.</li> </ol>

항 목		현 행	개 정 안
		10. <신설>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따라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96조	일반경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79조 내지 제 89조의 지명경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79조 내지 제 89조·제 89조의 2.....
제99조	국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p>① 생략</p> <p>1. <u>예정가격이 2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인 공사.</u></p>	<p>① 현행과 같음</p> <p>1. 예정가격이 100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미만인 공사·다만, 제9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p>
		<p>[주요내용]</p> <p>부실공사요인의 하나인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일반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전문공사 등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10억원 이상인 공사로 각각 축소 조정</p>	
		2. 예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용역	2. ....억원 미만.....
제104조	수의 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p>①·② 생략</p> <p>③법 제 7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u>공업표준화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표시 물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에 대한 공업규격표시허가 또는 등급사정을 받은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u></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p> <p>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 규격표시 물품 .....</p> <p>..... 광공업 규격표시허가.....</p>
제1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p>②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p>	<p>②.....</p> <p>.....</p> <p>.....</p>

항 목	현 행	개 정 안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신설>  ③~⑦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제114조 검사	① 생략 ②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 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②·③ (생략)	③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⑤(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8조 대가지급	② 법 제 8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	②.....



항 목	현 행	개 정 안
	<p>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을 때에는 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u>1월 이상 3년 이하</u>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후 지체없이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p> <p>3.~5.</p> <p>6. <u>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7.~9. (생략)</p> <p>10.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u>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u></p>	<p>.....</p> <p>.....1월이상</p> <p>2년이하.....</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p> <p>.....</p> <p>.....</p> <p>3.~5. (현행과 같음)</p> <p>6. ....</p> <p>.....이행 (제 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p> <p>7.~9. (현행과 같음)</p> <p>10. ....</p> <p>.....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p>